#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 안 번 호 | 20264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심사경과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 2208391 | 강승규의원 | 2025.2.24.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3.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 2209907 | 김교흥의원 | 2025.4.17. | |
| | 2215929 | 김정호의원 | 2026.1.8. | |
| | 2216009 | 박 정의원 | 2026.1.13. | |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5. 1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발전사업자들의 자체 투자보다는 외부 구매 의존이 증가하는 한편, RE100 참여 기업과 수요 경합, 수급 불균형 등이 발생하면서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의무자가 구매하도록 하면서 구매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4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목표관리대상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보급목표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15 신설).

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보급의무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6 신설).

라.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달한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그 부족분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급대체이행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마. 보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8 신설).

바.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센터 등을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9 신설).

사.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 발금 신청을 받는 경우 재생에너지원·발전량 및 발전 기간 등을 확인한 후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0 신설).

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비율을 100분의 80의 범위로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차. 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에 계약시장제도 운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정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5호의2부터5호의8까지 신설).

카.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3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목표관리대상자와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보급의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

제12조의5제5항 중 “구매하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수출 경쟁력 및 자원안보 강화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

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목표관리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개선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급의무량의 미달분에 대하여 에너지원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0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

제31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계약시장제도 운영

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운영

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운영

5의6.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관리

5의7. 제12조의19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5의8.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제33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3의3. 계약시장제도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위원

제35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유효기간) 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기한까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 자는 부칙 제2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중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의무자가 구매한 공급인증서의 경우 제12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급목표 및 제12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급의무량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종류와 이행 실적 인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 제도 운영 |
| <신 설> | 17.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
| <신 설> | 18.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 |
| 16. (생 략) | 19. (현행 제16호와 같음) |
|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 ④ (생 략) |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 |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

| | |
|---|---|
| |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br>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br>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br>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br>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br>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

| | |
|---|---|
| |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물량 등<br>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br>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br>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br>3. 산업·수출 경쟁력 및 자원안보 강화<br>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 |

| | |
|---|---|
| | 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 |

| | | |
|---|---|---|
| | | 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신 설> |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 |

| | |
|---|---|
| | 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br>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br>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br>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br>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br>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 |

| | |
|---|---|
| | 리대상자에게 수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목표관리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개선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

| | |
|---|---|
| |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br>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br>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br>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br>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br>4. 자원안보 현황<br>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

| | | |
|---|---|---|
| | | 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신 설> |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등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 |

| | |
|---|---|
| | 다.<br>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br>③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
| <신 설> |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급의무량의 미달분에 대하여 에너지원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 |

| | |
|---|---|
| | 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br>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 |

| | |
|---|---|
| | 경할 수 있다.<br>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
| <신 설> |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 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br>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br>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br>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0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 |

| | | |
|---|---|---|
| | |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br>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

| | |
|---|---|
| |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br>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br>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생 략)<br>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 |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br>----------<br>----------<br>「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 |

| | |
|---|---|
| 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7조(보급사업) ① ---------- ---------- ---------- ---------- ----------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업 |
| 3.·5. (생 략) | 3.·5.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 |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 ---------- ---------- ---------- ---------- |

| | |
|---|---|
| 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br>----------<br>----------.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의2. 계약시장제도 운영 |
| <신 설> | 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신 설> | 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운영 |
| <신 설> | 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운영 |
| <신 설> | 5의6.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관리 |
| <신 설> | 5의7. 제12조의20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
| <신 설> | 5의8.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
| 6. ~ 18. (생 략) | 6. ~ 18.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br>----------<br>----------<br>----------.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
|---|---|
| <신 설> | 3의2.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
| <신 설> | 3의3. 계약시장제도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위원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5조(과태료) ① ----------<br>----------<br>----------<br>------.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신 설> | 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